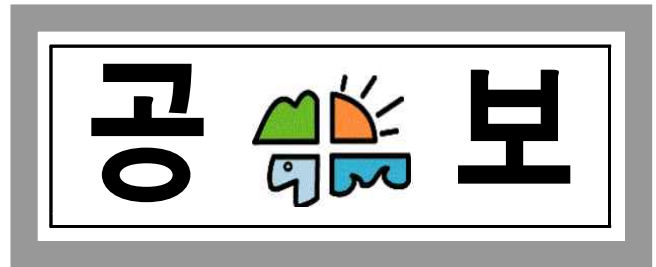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88호 2023년 9월 1일(금)

고 시

- 하천점용허가 고시 2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2호선, 교통광장 7호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· 3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6

공 고

-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0

●속초시 고시 제2023-120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
속초시장

1. 하천의 명칭		쌍천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	성 명	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
	주 소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	목 적	공작물 설치(드론 보관소)
	개 요	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	위 치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산42
	면 적	15m ²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		2023. 9. 7.~2027. 12. 31.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2호선, 교통광장 7호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2호선, 교통광장 7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였기에,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속초시 동명동 450-48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2호선, 교통광장 7호선)
 - 명칭: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2호선, 교통광장 7호선) 개설공사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: (주)하나자사신탁
 -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규모	금회 사업규모	비고
도로	대로3-2호선	L=340m, B=25~29.5m	L=37.4m, B=29.5m	
광장	교통광장 7호	A=3,248㎡	L=32.2m, A=124㎡	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(당초)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8. 31.
 - (변경)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10. 31.
6. 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구축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규모	금회 사업규모	비고
도로	대로3-2호선	L=37.4m, B=29.5m	155㎡	도시계획시설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
광장	교통광장 7호	L=32.2m, A=124㎡	124㎡	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

■ 토지조서(대로3-2호선, 교통광장 7호)

◦ 당초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	사업면적(㎡)			소유자 및 관계인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도로	광장	계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동명동	81-1	도	7689	-	3	3	국 (국토해양부)				
2	"	365-11	대	54	-	36	36	㈜하나자산 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			
3	"	365-12	대	10	-	1	1	㈜하나자산 신탁				
4	"	365-14	대	6	-	4	4	㈜하나자산 신탁				
5	"	365-10	대	106	-	54	54	㈜하나자산 신탁				
6	"	450-47	대	119	-	20	20	㈜하나자산 신탁				
7	"	450-48	대	155	39	6	45	㈜하나자산 신탁				
8	"	450-50	대	358	72	-	72	㈜하나자산 신탁				
9	"	450-51	도	298	8	-	8	㈜하나자산 신탁				
10	"	450-52	대	83	36	-	36	㈜하나자산 신탁				
계				8,878	155	124	279					

◦ 변경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	사업면적(㎡)			소유자 및 관계인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도로	광장	계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동명동	81-1	도	7596	-	3	3	국 (국토해양부)				
2	"	365-11	대	38	-	38	38	㈜하나자산 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			
3	"	365-12	대	10	-	1	1	㈜하나자산 신탁				
4	"	365-14	대	4	-	4	4	㈜하나자산 신탁				
5	"	365-10	대	53	-	53	53	㈜하나자산 신탁				
6	"	450-47	대	19	-	19	19	㈜하나자산 신탁				
7	"	450-48	대	45	39	6	45	㈜하나자산 신탁				
8	"	450-50	대	72	72	-	72	㈜하나자산 신탁				
9	"	450-51	도	8	8	-	8	㈜하나자산 신탁				
10	"	450-52	대	80	36	-	36	㈜하나자산 신탁				
계				7,925	155	124	279					

1.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(변경없음)

■ 위 치 : 속초시 동명동 450-48 번지 외 9필지

(대로 3-2호선, 교통광장 7호선)

SCALE=NONE



●속초시 고시 제2023-122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종이 시행하는 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3년 8월 29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주체의 성명·주소
 - 사업주체 및 대표자 :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종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
3.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
 - 위치: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53-3 외 15필지
 - 면적: 34,027㎡
4. 건설주택의 규모
 - 건축면적 : 7,124.2554㎡
 - 연면적 : 38,657.1016㎡
 - 주건축물수 : 12동
 - 지하층수/지상층수 : 지하 2층/지상 4층
 - 총세대수 : 134세대
 - 사업비 : 216,600,000천원
5. 사업시행기간 : 2023. 10. 31. ~ 2025. 12. 31.(예정)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 -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 - ※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협의조서(붙임)
7.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(☎033-639-154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.

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협의조서 1부.

<붙임>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1.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

1.1.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53	대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	-	증) 34,783	34,783	-

1.1.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53	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	34,783	도시 기능·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2.1. 용도지역 결정 조서

2.1.1.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 없음)

구 분	구역내 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34,783	-	34,783	100	-
자연녹지지역	15,398	-	15,398	44.3	-
제1종일반주거지역	19,385	-	19,385	55.7	-

3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3.1. 도로

3.2.1. 도로총괄표

■ 기정

구분	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계	-	-	-	-	-	-	-	-	-	-	-	-
중로	-	-	-	-	-	-	-	-	-	-	-	-

■ 변경

구분	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계	1	48	756	-	-	-	-	-	-	1	48	756
중로	1	48	756	-	-	-	-	-	-	1	48	756

3.2.2.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중로	3	67	10 ~ 13.5	국지 도로	48	대포동 304-2	대포동 454-6	일반 도로	-	-	

3.2.3. 도로 결정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중로 3-67	- 노선 신설 - 폭원 : 10 ~ 13.5m - 연장 : 48m	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

4.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4.1.1.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

구분	가구 번호	획 지			비고
		획지번호	위 치	면 적(m²)	
신설	A	1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	34,027	공동주택 (연립주택)
합 계				34,027	

4.2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4.2.1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

도 면 번호	위치	구분	결정내용
A-1	대포동 753-3번지 일원	허용용도	◦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
		불허용도	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 자연녹지지역 20% 이하, 제1종일반주거지역 60% 이하
		용적률	◦ 전체 용적률 60% 이하
		높 이	◦ 지하2층, 지상4층 이하(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)
		배 치	◦ 도면참조
		형 태	◦ 도면참조
		색 채	◦ 도면참조
		건축선	-

5.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

5.1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A-1	대포동 753-3번지 일원	단지내 조정	◦ 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	
		차량진출입 허용구간	◦ 교통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차량 진·출입구 설치 ◦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 입구 설치	
		주차장 설치기준	◦ 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 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08. 25.

속 초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23. 08. 28. ~ 2023. 09. 11. (14일간)
2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,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당사자		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:2023.08.22.)	이주○	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1/2	건축물 부존재	금호동 482-181	목조/ 주택 117.97㎡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:2023.08.22.)	우병○	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502-43	건축물 부존재	금호동 502-43	시멘트블럭조/ 주택 13.33㎡

4. 유의 사항

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(☎033-639-15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